

	교수업적평가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5
		제정일자	2000.03.01.
		개정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7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임교원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수업적평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기획, 평가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
2. 교수들이 제출한 업적평가 자료에 관한 사항
3.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수업적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입학홍보협력처장, 학생성공처장, 산학협력처장, 전략기획처장, 교목실장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무) 위원은 교수업적평가용 자료 및 그 심의결과 중 제출자의 개인별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 년 6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